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6. 2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6월 5일 이봉수 의원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6월 25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봉수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근로자의 가구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서울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구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가)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 나)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다)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3)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4)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함(안 제8조)
- 5)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9조)
- 6) 위원의 수당(안 제10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받고 서울에서 기초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마포구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마포구 생활임금을 정하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가. 안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하였고
 - 나.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5조에서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6조에서는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회의소집 요구 및 간사 1명을 두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하였으며,

라.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함

마. 안 제9조에서는 공공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바.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수당을 규정함

○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급대상자가 445명에 소요예산은 6억 5,784만 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음.

< 마포구 생활임금 시행 시 소요예산 >

▶ 2016년도 소요예산 : 6억 5,784만 8천원

= 6억 1,481만 2천원(2015년도 소요예산) × 7%(임금상승률)

= 6억 5,784만 8천원(2016년도 소요예산)

▶ 2015년도 소요예산 산출근거 : 6억 5,784만 8천원

▶ 산출근거

- 서울형 생활임금(기본급+교통지+식대 포함) 수준 : 6,687원(시간급)
- 마포구 생활임금 수준 : 6,687원(시간급)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 생활비 적용기준 : 6,687원 × 월 208시간 = 1,397,583원
- 마포구 생활임금 대상자 및 소요예산 : 6억 1,481만 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근로자수(명)	추가 소요예산	적 용 조 건
구 직접고용	293	437,884	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나 출자·출연기관 현업직 근로자중 서울시 생활임금 월 1,397천원 (기본급+교통비+식대)미만인 근 로자가 적용됨
출자·출연기관	152	176,928	
계	445	614,812	

- 동 조례안은 2015.6.8.~ 6.12.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담당부서 일자리진흥과 의견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에서 생활임금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구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음.
- 검토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최저임금법」을 2012.7.1.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현재 생활임금에 관한 근거법률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으나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및 성북구외 9개구 등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현 시점에서 마포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시기적절하다고 보며 기타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43만 2천원(시급 5,580원)으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월 60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시급하게 마포구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포구 생활임금을 지원하여야 하나, 마포구 재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1) 먼저 마포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현업직 근로자 중 서울시 생활임금 월 139만 7천원(기본급+교통비+식대 포함)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6.1.1.부터 시행하고 2) 나머지 근로자는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마포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